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0월 21일
미래·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2년 10월 6일
- 나. 제출자: 강서구청장
- 다. 회부일자: 2022년 10월 11일
- 라. 상정일자: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22.10.21.)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및 시행(2022.4.2.)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상품권 발행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강서사랑상품권 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구 금고를 설치하고 직접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며, 신탁체결의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함 (안 제3조의2 신설)

나. 판매대행점이 상품권의 발행·판매, 충전·환전, 가맹점 관리 및 상품권 운영 시스템 관리를 대행토록 함 (안 제4조, 안 제5조)

다. 가맹점 등록 제한을 업종 단위 외에 사업체 단위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제2항제3호)

라. 가맹점 등록 신청 처리 기한 설정 (안 제5조제3항)

마. 상품권 잔액 환급 기준을 “상품권 구매건별 구매금액”으로 함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6조~제7조, 제10조
- 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2. 9. 2. ~ 9. 22.) 결과: 의견 없음
- 2)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원안 동의
- 3) 규제심사(기획예산과): 해당 없음
- 4) 성별영향평가(가족정책과): 해당 없음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권오숙)

가. 개정취지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강서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문의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 개정내용

- **안 제3조의2**에서는 강서사랑상품권 자금관리를 위해 구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신탁운영이 가능하도록 자금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단서 조항1)에 신탁계약 체결의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함
 - 이는 상품권 운영자금을 자치구 구 금고에서 관리하여야 하나, 각 자치구가 현재 금고 공모시기로 자금 이전을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여 한시적으로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의 선불충전금을 포함한 상품권 운영자금을 시 금고(신한은행)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계획이므로 단서규정을 추가한 것임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상품권 운영 및 발행의 위탁주체를 ‘판매대행점’으로 일원화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법률 근거 없이 운영되던 ‘운영대행사’ 관련 규정을 삭제함
- 안 제5조제2항에서 가맹점 등록 제한을 업종 단위 외에 사업체 단위로 세분화함으로써 개별 사업체 특성을 기준으로 가맹점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5조제3항을 신설하여 가맹점 등록 신청이 대한 처리 기한을 7일 이내로 설정하여 신청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 안 제7조에서는 상품권 운영시스템에 맞게 상품권 잔액 환급 기준을 ‘상품권 구매건별 구매금액’으로 명확히 규정함

다. 종합의견

-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2020년도부터 1,200억 상당의 서울강서사랑상품권²⁾을 발행하여 제로페이³⁾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음[참고: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 및 이용 현황]

2) 서울강서사랑상품권: 강서구에서 발행하는 모바일 지역상품권을 통칭하는 말로, 서울페이플러스, 티머니페이, 신한쌀, 머니트리, 신한플레이 등 모바일앱을 통해 구매

3) 제로페이: 소상공인의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서울시와 지자체, 금융회사,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협력하여 도입한 공동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 강서사랑상품권의 사용처는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제한되지만 할인율(5~10%)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어, 10% 할인이 적용되었던 2022년 2차 판매(2022. 9. 2.)에는 17분 만에 매진되기도 하였음
- 이처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가 증가하고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상품권 이용자의 예탁금과 운영자금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운영 과정에서의 제도적 미비점도 발견됨
- 따라서 이용자의 자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가맹점과 이용자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강서사랑상품권의 운영에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 또한 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는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이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되어 내년도 강서사랑상품권의 발행량 및 할인율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붙임 관계 법령 1부.

■ 발행 현황

(단위:건, 백만원)

연도	발행기간		발행규모	판매건수	판매금액	할인율	비고
2020	1차	2020.04.01.~04.08.	5,000	13,371	5,000	7%	
	2차	2020.07.16.~08.03.	7,000	16,115	7,000		
	3차	2020.10.26.	4,500	9,735	4,500		
소 계			16,500	39,221	16,500		
2021	1차	2021.02.04.~03.24.	18,000	50,801	18,000	10%	
	2차	2021.07.12.	10,000	14,063	8,100		시스템 오류로 잔여금 1,900백만원 발생
	3차	2021.09.07.	11,000	23,240	12,900		
	4차	2021.11.02.~11.05.	15,000	27,795	15,000		
	5차	2021.12.13.~12.30.	10,000	32,275	10,000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	
	6차	2021.12.22.~2022.01.	1,779	5,149	356	5%	e서울사랑상품권
소 계			65,779	153,323	64,356		
2022	1차	2022.01.25.~02.08.	18,000	46,712	18,000	10%	
	2차	2022.09.02.	19,800	35,773	19,800		
소 계			37,800	82,485	37,800		
합 계			120,079	275,029	118,656		

■ 이용 현황

(단위:건, 백만원)

기 간	결제건수	결제금액	비고
2020. 01. ~ 2020. 12.	432,625	12,388	
2021. 01. ~ 2021. 12.	1,096,016	39,448	
2022. 01. ~ 2022. 07.	333,318	15,263	
합 계	1,861,959	67,099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유통 지역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②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지역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